

# 최근 환경보전 국제협약의 추이와 정책대응

鄭 鎮 勝

〈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〉

이 자료들은 지난 8월 26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환경보전의 국제화와 정책대응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내용임. 〈편집자註〉

## I. UNCED의 배경과 의의

### 1. 환경보전의 국제화

- 1970년대 까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대응은 주로 局地的인 대기 및 수질의 보전, 유독성 화학 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증대가 장기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의 환경문제에 집중되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인간의 삶의 質, 즉 광의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.
- 1980년대 후반에 남극상공의 오존층파괴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지구온난화 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예측가능해졌고 그 영향이 인류 생존에 위협적임을 인식함에 따라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국제문제로 발전.

### 2. 환경보전과 경제·사회발전의 조화

- 생산부문은 환경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이를 소비부문에 공급함.
- 그러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효용가치가 없어진 오염물질 및 폐기물을 자연에 무방비로 배출하게 되며, 이것이 환경오염의 주요한 원인이 됨.
- 오염물질의 배출증가로 환경이 악화될 경우 생산기반을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삶의 質을 저하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됨.

- 결론적으로 환경의 오염은 무분별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며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는 환경보전이 필요. 즉, 경제·사회발전과 환경보전은 장기적으로 대립적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.

- 이는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경제·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며, 경제·사회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항상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됨을 의미.
- 또한 南·北間의 소득격차가 현저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함을 의미.
- 3. 이상과 같은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범국가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되자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환경관련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금년 6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(UNCED)에서 이들을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음.

## II. UNCED의 목표와 협상결과

### 1. 회의의 목적

-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통한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「地球憲章」의 채택.
- 「地球憲章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인 “21세기를 향한 실천계획”(Agenda 21)을 채택.
- 개발도상국이 “Agenda 21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롭고 추가적인 지원자금을 선진국 중심으로 조성.
- 환경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對 개발도상국 이전 방안의 강구.

- 「地球憲章」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고 각국의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지구환경보전위원회를 U.N. 산하에 설치.
- 기후변화, 생물다양성 및 삼림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.

## 2. 주요내용

### (1) 리우선언(前文과 27개항의 원칙으로 구성)

-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를 통하여 건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통한 지속적인 개발이 가장 중요.
- 각국은 국내자원을 개발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自國의 활동으로 인한 타국의 환경훼손방지책임을 보유.
-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빈곤퇴치와 생활수준격차의 해소가 필수적임.
-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는 범세계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지만 국별부담은 환경파괴의 책임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.
-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위한 생산·소비행태변화를 위한 정책 및 인구증가를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인구정책의 추진.
-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환경관련정보에의 접근기회를 확충.
- 환경보호가 각국의 무역정책에서 자의적이거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됨.
- 환경파괴를 유발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유해 할 수 있는 활동 및 물질의 국가간 이동 억제.
- 환경오염의 사전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와 사후적으로 오염자부담원칙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환경비용의 내부경제화를 촉진.

### (2) Agenda 21(경제·사회적 부문을 중심으로)

- 지속가능한 개발촉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의 수립.
  - 국제교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개선,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방적, 비차별적이며 공정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촉진.
  - 환경보전과 무역증대가 상호보완적임은 사실이나, 선진국에 적절한 환경기준에 따른 무역규제가 개도국에게 불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.
  - 개도국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개발금융조달과 외채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.
  - 건전한 경제사회정책, 기업가정신의 육성, 환경을 고려한 자원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.
- 빈곤퇴치와 소득격차의 해소, 지역균형발전 등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며, 이를 위하여

- 인력개발정책,
- 경제·사회개발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지역단체의 참여유도.
- 지역특징, 저所得層들의 요구를 감안한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필요.

### - 환경보전을 고려하지 않는 생산·소비행태의 전환을 위하여

-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사용의 효율성 제고,
- 생산·소비과정에서의 폐기물발생 억제,
- 환경상품의 생산증대와 함께 개인 및 가계의 구매유도,
-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한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부과금, 稅制, 예치금제도 등 경제수단을 적극 활용.

### - 도시 및 지방의 빈민층과 여성, 청소년, 노인, 신체적 불구자 등 소수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

- 적절한 주거지역의 제공.
- 주거지역의 특별관리대책 수립.
- 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 및 관리대책의 촉진.
- 환경관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.
- 재해우발지역의 관리특별대책의 수립 등이 필요.

### -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의 개선과 효율적인 법규체계의 수립을 위하여

- 정책의 수립, 운영과정에서 여론의 참여 보장.
- 정부내의 환경관련 각부처의 의무조정기능 강화.
- 사회가치관을 고려하여 환경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한 동기부여 등 적절한 수단을 강구.
-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비용이 고려되도록 시장원리를 최대한으로 적용.
- 환경과 경제의 통합회계(*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*)를 조속히 수립하여 전통적인 국민회계의 보조적 역할 수행.

### - 기업은 환경문제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과학기술의 개발, 人的 자원의 개발 등에 노력.

### - 경제성장, 사회발전 및 빈곤퇴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최우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개선을 위하여도 필요. 이러한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"Agenda 21"을 수행하기 위한 선진국의 對 개도국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은 미래후손들을 포함한 인류전체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 옴.

- "Agenda 21"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은 대부분 自國의 공공 및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되지만 선진국들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UN이 설정한 해외개발기금(ODA)의 목적치, 즉 GNP對比 0.7%의 수준을 가능하면 빨리 달성하도록 노력.

- 해외개발기금 이외에도 개도국의 Agenda 21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하여 다음 방법을 포함.
  - 국제개발기금(IDA) 10
  - 지역개발은행은 讓許性 자금을 제공
  - 지구환경기금(GEF)은 세계은행, UNDP, UNEP에 의하여 주관되어지나 意思決定과 運營은 공개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함.
  - 선진국의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검토.
- 기타의 재원조성방안으로 碳素稅, 오염권 판매제도 및 국방비의 재분배등을 검토.
- UNCED사무국은 개도국이 "Agenda 21"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~2000년 기간 중 年平均 약 6,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, 이 중 약 1,250억 달러가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추정.
- 환경관련기술의 對 개도국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
  - 선진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련 공공기술의 원활한 이전촉진.
  - 선진국의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술은 해외개발기금이 상업적으로 구매하여 비상업적으로 개도국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.
  - 특히에 등록된 기술이 不實施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게 실시되면서 기술의 이전을 거부할 경우 강제실시법을 활용함이 가능.

## 평가

### (1) 리우선언

- UNCED가 추구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기본지침은 당초 「地球憲章」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先·後進國間의 협상과정에서 내용이 모호하게 변질되면서 본래의 취지보다 약화된 「리우宣言」으로 합의.
-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는 범세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세부사항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점에 대한 대립을 보임.
  - 선진국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별 의무조항, 강력한 예방조치, 오염자 부담원칙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수단의 활용을 통한 환경비용의 내부경제화를 주장.
  - 후진국은 빈곤의 탈피를 위한 경제성장의 중요성, 국내 자원사용에 대한 자주권의 확보등을 요구했으며, 지구환경오염에 대한 역사적, 누적적 책임을 져야 하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환경오염문제해결을 위해 환경개발정책과 기술이전을 할 것을 주장.
- 리우선언은 국가간의 입장대립을 교묘히 절충시킨 정치

적 선언문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주장인 인간중심의 환경, 주권적 자원개발계획, 개도국의 특수사정고려,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의 불가, 공동의 차등적 책임 등과 아울러 선진국이 주장하는 환경파괴 예방조치, 오염자 부담원칙,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함께 포함.

### (2) 21세기를 향한 실천계획(Agenda 21)

- 「리우宣言」의 구체적 실천계획인 "Agenda 21"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경제·사회부문, 자원보전관리부문, 주요그룹의 역할부문, 이행방법부문등 모든 분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음.
- "Agenda 21"은 구속력 있는 규범은 아니지만 각 의제의 세부적 실천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, 특히 재원부문에서 선·후진국간에 점에 대한 대립이 있었음.
- 개발도상국은 지구환경오염의 역사적 책임이 선진국의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경제성장정책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Agenda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對 개도국 자금의 지원이 선진국의 책임하에 조달되어야 함을 주장.
  - 지구환경기금 등 새로운 재원의 창설을 요청.
  - 선진국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던 기준의 해외개발기금(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)은 존속하되 U.N. 합의에 따라 선진 각국은 GNP의 0.7%까지 그 자원규모를 확대.
  - 지구환경기금은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함.
  - Agenda 21에 포함된 대부분의 의제가 각국 정부의 국내정책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분야가 많음을 감안할 때 개도국의 Agenda 21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선진국의 비협조로 불가능해질 경우, UNCED 자체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.

## III. 전망

1. 上記의 결과로 인하여 리우회의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급한 결론일 수 있음.
- 리우회의는 세계의 많은 정치가들에 대하여 지구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불러 일으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의 국내경제·사회개발정책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.
- 따라서 앞으로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는 세계적으로 더 큰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며, 의정서 작성관련 협상의 진전도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.
- 특히 금년 가을에 개최되는 47次 유엔총회에서 선진국들의 재원조성여부와 IDA 10의 결과는 리우회의의 성과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임.

## 2.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관계의 재정립

- UNCED는 국별, 지역별 역학관계에 새롭고 중요한 변화의 시발점을 제공.

- 舊蘇聯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에 따라 동서냉전시대가 종결되고 美國이 유일한 Superpower로 존재하면서 세계는 東·西의 대립에서 南·北의 대립체제로 전환되었으며 當와 貧困의 격차에 따라 이해가 대립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.
- UNCED의 여러가지 의제의 협상과정에서 美國은 지도력을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나, 또는 지도력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노출.
- 환경관련 국제협상이 先·後進國間의 대립으로 압축되더라도, 그룹내부의 단결력은 약화될 것임.
  - 후진국의 경우 알젠틴, 韓國은 물론 소말리아, 잠비아 등과 같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, 가장 동질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E. C.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.
  - 이는 향후 先·後進國間의 협상이 보다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의제에 따라서는 先·後進國과 관계없이 이해를 같이하는 그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.

## 3. 개발도상국의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주도권 강화

- 최근의 지구환경오염은 선진국이 경제성장위주의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행태에 기인.

- 그러나 향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감안할 때 개도국은 가까운 시일내에 선진국의 오염물질 배출규모를 능가할 뿐 아니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많은 자연자원, 유전종자,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음.
- 따라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점차 개도국으로 이동할 전망이며, 향후 개최예정인 의정서협상에서 선진국이 리우회의에서와 같이 자금지원과 기술이전요구를 저지하고 기본의 입장을 고수하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시되고 있음.

## IV. 정책대응

### 1. 정부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

-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은 크게 시장실패(market failure)와 정책실패(policy failure)로 구분.

- 시장실패는 주로 環境財의 특성인 經濟外部性(externality)에 기인.
- 정책실패는 장기적으로 경제·사회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불균형적인 정책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에너지 低價格政策,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지급 또는 특별가격정책, 인구의 특정도시집중 유발정책 등을 포함.

-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·사

회개발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정부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, 추진과정에서 환경성의 검토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하여 환경처의 정부부처간 환경업무의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.

- 환경업무는 환경문제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정부 12개부처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및 사업은 장기적으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.
-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환경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경우 국민과 기업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환경정책의 추진이 가능.

### 2.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 가능성에 대비

- 최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역규제조치와 그린라운드(green round), 즉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多者間 무역질서형성에 관한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.

- 多者間의 환경관련 국제협상에서 무역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南·北間의 소득격차의 변화 및 각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관련조항이 포함되더라도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.
- 환경관련 국제협약에 무역규제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속단임. 예를 들면 「기후협약」에 의하여 화석연료사용을 규제할 경우, 향후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기계, 전자사업은 비교우위는 향상될 것이며, 철강 및 비철금속의 비교우위는 악화될 것임.

- 최근에 선진국들은 自國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있는바 이에 미달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일방적인 수입규제 또는 기타의 무역제한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환경의 무역장벽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음.

- 무역규제의 논리적 배경은 환경오염의 外部非經濟性(negative externality)을 내부경제화함으로써 자원의 적정배분을 통한 경제전체의 효율성 증대와 환경자원의 남용을 방지함에 있음.

- 그러나 실제로는 각국이 경제·사회여건에 따라 상이한 환경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환경기준이 높은 국가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국제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.

- 즉 自國제품과 국내의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제품 간의 경쟁력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, 보조금, 수입규제 등의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.

-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주요교역국인 美國, 日本 및 E. C.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, 이 경우 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

하기 위한 보완제도가 마련되어져야함.

- 장기적인 환경기준 상향조정계획을 예시함으로써 기업의 대응방안마련 기회를 제공.
-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과 환경관련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촉진 지원방안 강구.
-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규제방안 강구.

### 3. 환경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증대

- 환경오염이 생산과 소비의 증가, 즉 경제규모의 증가에 기인함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경제·사회개발을 위하여는 정부의 환경투자규모증대를 통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 필요.
-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함을 감안하여 현재 GNP 대비 0.14% 수준에 불과한 중앙정부의 환경투자를 장기적으로 선진국수준인 0.6~1.0% 내외로 증가.

〈表 1〉 중앙정부 환경관련투자의 국제비교(1989) (單位 : %)

	韓國	日 本	美 國	ス위스
GDP對比 환경투자비율	0.14	0.84	0.57	1.03

### 4. 환경관련기술의 개발 및 오염방지산업의 육성

- 국내·외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事前의 오염물질의 배출억제와 사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하여는 환경관련기술의 개발과 오염방지산업의 육성이 필요.
- 이들은 첨단산업일 뿐만 아니라 正의 외부경제성(*positive externality*)을 갖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.
  - 정부의 지원은 금융·세제상의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관련기술 및 산업에 대한 수요의 증대를 위하여 환경규제법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져야 함.
- 환경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산업의 육성은 他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자체가 유망수출산업임.
  - UNCED 결과 1993년에는 ODA(약 570억달러), GEF(40억달러), IDA 10등을 통하여 상당규모의 자금이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直·間接으로 투입될 예정.

### 5. 환경외교의 강화

- UNCED는 환경이 안보, 경제와 더불어 200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.
- 그러나 上記의 문제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분리가

어려우며 환경이 점차적으로 稀貴財에 포함되어 보호, 절약되어져야 함에 따라 환경이 지역간, 국가간 분쟁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, 분쟁이 발생될 경우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점차 발생.

- 앞으로 환경관련 다자간, 쌍무간 국제협약의 수는 급속히 증대될 것이며, 따라서 환경외교의 비중도 점차 增加할 것으로 예상.

## VI. 결론

### 1. 최근 국내외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

- 국내 :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생활여건의 개선과 함께 환경의 質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.
  -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유발된 환경오염은 향후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의 증가에 따라 더욱 악화될 전망임.
  - 양산쓰레기 埋立場, 안면도 핵 폐기물 매립장 및 낙동강 폐놀유출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피해로부터 보호받으려는 국민의 욕구는 집단화 행동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음.
  - 경제적인 면에서는 과거의 原材料, 노동집약 低加工·저부가가치 형 산업이 국내·외에서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산업구조는 자원절약적이며 기술·자식집약적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을 필요로 하며 이는 환경적으로 청정산업의 육성을 의미.

- 對外 : 지구온난화, 산성비, 오존층 파괴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따른 지구환경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으며, 최근의 동서긴장완화와 더불어 지구환경보전문제가 인류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.

-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규범, 또는 선진국의 국내환경정책 강화에 따라 환경오염유발국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先·後進國間의 통상마찰 문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.

### 2.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·사회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경제개발과 환경의 조화가 필요

- 최근의 UNCED를 포함한 국제환경보전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경제·사회발전전략과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시련보다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. ♦